법무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5. 3. 20.(목)

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 강화 및 구상권 행사 실질화를 위한 개정「범죄피해자 보호법」시행

● 내일(3. 21.)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액을 상향**하고,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가해자 보유재산 사실조회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시행령 · 시행규칙이 시행됩니다.**

<개정 법령 주요내용>

▸ **[범죄피해구조금 제도 강화]**

지급액 증액 [시행령]	구조금 지급액 산정시 월급액 등 기준금액에 곱하는 개월수 및 그 상한을 **일괄 상향하여 범죄피해구조금을 20% 증액**
지급대상 확대	구조금 지급대상을 ①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또는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장기체류자격 있는 외국인(이하 '결혼이민자')**과 ② **장해 · 중상해구조금 신청 후 구조금을 받기 전 사망한 자의 유족**으로 **확대**
지급방법 개선 - 분할지급제 도입	**연령, 장애, 질병** 등 사유로 **구조금 관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

▸ **[구상권 행사 실질화]**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의 실질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해자의 부동산·금융자산 등 보유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범죄피해자 인권주간 신설]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범죄피해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29일이 포함된 1주간을 '범죄피해자 인권주간'으로 지정**

1. 개정 배경

○ 그간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 확대**,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에 따르는 **구상권의 적극적 행사**에 대한 끊임없는 요구가 있었는바, 이에 따라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제도를 개선하고(지급액 증액·지급대상 확대·분할지급제 도입), 가해자의 보유재산 조회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되어 3. 21. 시행됩니다.**

2. 주요 내용

1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액 증액을 통한 피해자 직접지원 강화

○ **(기존)**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제공되는 구조금 지급액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개선)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조금 산정시 기준금액(월급액 등)에 곱하는 개월수 및 그 상한을 일괄적으로 **상향하여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구조금 지급액을 20% 증액함으로써 범죄피해자 및 유족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도모**하였습니다.

사례 - 유족구조금

□ **피해자(월 평균수입 300만 원)가 범죄로 인해 사망하고, 유족으로 배우자 및 중학생 자녀 1명이 있는 경우 유족구조금 지급액**

(개정 전) 유족 각자에게 **67,921,600원** (=3,396,080원*×40개월×(6/6)÷2)

(개정 후) 유족 각자에게 **81,505,920원** (=3,396,080원*×**48개월**×(6/6)÷2)

▶ 지급액 총 약 2,717만 원(20%) 증가

* 월급액이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2025년 상반기 평균임금 기준 산정

2 범죄피해구조금 지급대상자 확대

○ (기존) ▲해당국의 상호보증이 있는 외국인만 구조금을 받을 수 있어 상호보증이 없는 결혼이민자는 구조금을 받지 못하고, ▲장해·중상해구조금 신청한 범죄피해자가 구조금 지급 전 범죄피해와 무관하게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할 수 없었습니다.

☞ (개선) ① 외국인이 **국민의 배우자** 또는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장기체류자격 있는 경우** 상호보증 없이도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② 장해·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피해자가 구조금 지급 전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여, **구조금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였습니다.

사례 1. 외국인 배우자

□ A국 국적의 피해자(F-6 결혼이민 체류자격 소지, 월 평균수입 300만 원)이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하여 자녀와 함께 거주하던 중 범죄로 인해 사망한 경우 유족구조금

(개정 전) 자녀·배우자 모두 유족구조금 지급받지 못함(A국 상호보증 없음)

↓

(개정 후) 자녀·배우자 각 유족구조금 81,505,920원 지급

(=3,396,080원*×48개월×(6/6)÷2)

* 월급액이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2025년 상반기 평균임금 기준 산정

사례 2. 장해·중상해 구조금 신청 후 사망

□ 배우자가 있던 피해자(월 평균수입 300만 원)가 범죄로 인해 전치 8개월의 중상해를 입어 2025년 4월 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하였으나, 심의가 계속되던 중 2025년 5월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중상해구조금

(개정 전) 유족은 중상해구조금 지급받지 못함

↓

(개정 후) 유족에게 중상해구조금 27,168,640원 지급 (=3,396,080원*×8개월×(6/6))

* 월급액이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2025년 상반기 평균임금 기준 산정

3 분할지급 제도 신설을 통한 구조금 지급방법 개선

○ (기존) 현행법은 구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미성년자 등 구조금 관리능력이 부족할 수 있는 피해자에게도 다액의 구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개선) 연령,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구조금 관리능력이 부족한 범죄피해자에게는 **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보호가 필요한 범죄피해자 및 그 유족의 생활에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사례 - 미성년 자녀의 유족구조금

□ **한부모가정에서 부 또는 모가 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중학생 자녀가 받는 유족구조금**

(개정 전) 구조금 163,011,840원 일시 지급 (=3,396,080원*×48개월×(6/6))

⇒ **미성년자녀 본인 또는 후견인의 구조금 일시 소진 우려 있음**

(개정 후) 구조금 48개월간 매월 3,596,867원 지급**

* 월급액이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2025년 상반기 평균임금 기준 산정

** 은행연합회 2025. 2. 17. 공시 신규취급액 COFIX 기준

4 가해자 보유재산 조회를 통한 구상권 행사 강화

○ (기존)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와 관련하여 **가해자의 보유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 규정이 없어 가해자가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개선) 피해자에게 구조금 지급 후 가해자 대한 **구상권 행사 시 가해자의 동산·부동산·금융자산·급여 등 보유재산을 조회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집행이 가능**하게 되어 가해자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례 - 가해자 보유재산 조회

□ 가해자가 직장 및 급여를 숨기고, 특정 은행 계좌에만 재산이 있는 경우

(개정 전) ① 급여에 대해 바로 보전처분을 하기 어렵고, ② 예금채권과 관련해서도 재산확인 및 집행에 수개월이 소요되어 그 사이에 가해자가 재산을 은닉하면 집행이 불가능해지는 등 어려움이 있었음

⬇

(개정 후) 지구심의회에서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직장 및 보수월액을 특정하여 급여에 대해 바로 보전처분을 하거나, ② 금융기관에 예금 잔액 등을 확인하여 바로 특정 금융기관의 예금채권 압류·추심하는 등 효과적인 구상권 행사·집행 가능

5 범죄피해자 인권주간 신설

○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11월 29일*이 포함된 1주간을 '범죄피해자 인권주간'으로 지정**하였습니다.

* 1985. 11. 29. - UN 총회 **'범죄 및 권력남용 피해자를 위한 정의에 관한 선언'** 채택일

○ 매년 인권주간에는 **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 필요성 및 범죄피해자 인권의 중요성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3. 향후 계획

○ 법무부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보다 **두터워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범죄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 실무를 개선하고, 제도 정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 법무부는 앞으로도 **범죄피해자가 조속히 피해를 회복하고 평안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첨 부] 신구조문대비표 3부

담당 부서	인권국 인권구조과	책임자	과장	정가진 (02-2110-3640)
		담당자	검사	강민정 (02-2110-4252)

규제 새로고침 규제혁신이 국가성장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범죄피해자 보호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1조의2(범죄피해자 인권 주간)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범죄피해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으로 한다.
제17조(구조금의 종류 등) ① 구조금은 유족구조금·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하며,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제17조(구조금의 종류 등) ① ----------구분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은 해당 구조피해자에게 지급한다. <단서 신설>	③ ----------. 다만,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한 구조피해자가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원인이 된 범죄행위로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라 맨 앞의 순위인 유족에게 지급하되, 순위

	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신 설>	④ 구조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 연령, 장애, 질병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구조금을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구조피해자나 그 유족이 구조금의 분할 지급을 청구하여 제24조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구조심의회가 구조금의 분할 지급을 결정한 경우 2. 제24조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구조심의회가 직권으로 구조금의 분할 지급을 결정한 경우
제18조(유족의 범위 및 순위) ① 유족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8조(유족의 범위 및 순위) ① 유족구조금이나 제1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하는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이하 “유족구조금등”이라

	한다)----------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유족구조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1항 각 호에 열거한 순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열거한 사람 사이에서는 해당 각 호에 열거한 순서로 하며, 부모의 경우에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하고 친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③ 유족구조금등을---------- ---------- ---------- ---------- ---------- ---------- ---------- ----------.
④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유족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 ----------유족구조금등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구조피해자가 사망하기 전에 그가 사망하면 유족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순위 또는 같은 순위의 유족이 될 사람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2. ---------- ----------유족구조금등을---------- ---------- ---------- ----
3.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후 유족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순위 또는 같은 순위의 유족	3. ----------유족구조금등을---------- ----------

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
제19조(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① ~ ④ (생 략)	제19조(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유족구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구조피해자”는 “구조피해자 또는 맨 앞의 순위인 유족”으로 본다. <후단신설>	⑤ 유족구조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조피해자”는 “구조피해자 또는 맨 앞의 순위인 유족”으로 본다.
⑥ · ⑦ (생 략)	⑥ · ⑦ (현행과 같음)
제23조(외국인에 대한 구조) 이 법은 외국인이 구조피해자이거나 유족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23조(외국인에 대한 구조)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 외국인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 법을---------.
<신 설>	1. 해당 국가의 상호 보증이 있는 경우
<신 설>	2. 해당 외국인이 구조대상 범죄피해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의 영주자격 나.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의 장기체류자격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
제24조(범죄피해구조심의회 등) ① 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각 지방검찰청에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이하 “지구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법무부에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이하 “본부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4조(범죄피해구조심의회 등) ① -------지급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② 지구심의회는 설치된 지방검찰청 관할 구역(지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청의 관할 구역을 포함한다)의 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② ----------지급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에----------.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9조(결정을 위한 조사 등) ① 지구심의회는 구조금 지급에	제29조(결정을 위한 조사 등) ①----------지급 및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을 조사하거나 의사의 진단을 받게 할 수 있고 행정기관,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에----------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9조의2(자료요청) ① 지구심의회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가해자의 손해배상금 지급능력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법원행정처·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국세청 등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1. 가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2. 가해자의 토지·건물에 관한 부동산 등기정보자료 3. 가해자의 재산에 관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4. 가해자의 전세권에 관한 부동산 등기정보자료 5. 가해자의 자동차·건설기계·항공기 등록자료 및 선박 등기자료 6. 가해자가 임차한 주택에 관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자료 7. 가해자의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및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회원권에 관한 자료 8.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해자의 보수·소득 자료(가해자가 직장가입자인 경우에는 그 사용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9. 가해자에 대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과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받거나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자료나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⑤ 지구심의회는 손해배상청구권 추심이 완료되는 등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에 관한 업무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받거나 수집한 자료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신 설>	제29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① 지구심의회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가

	해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가해자의 손해배상금 지급능력이나 재산은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장이나 그 특정점포에 가해자에 대한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적금·저축의 잔액 또는 불입금·지급금과 유가증권 등 금융자산에 대한 증권·증서의 가액 2.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 환급금 및 지

	급금 ② 지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가해자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되거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2.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수사 또는 재판 절차에서 가해자가 범죄사실 또는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이나 그 특정점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장이나 그 특정점포에 금융정보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 제4조의2제5항 및 제4조의3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

	라 제공받거나 수집한 금융정보등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자료나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제공된 금융정보등은 가해자 또는 제3자에 대한 수사 또는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할 수 없다. ⑦ 지구심의회는 손해배상청구권 추심이 완료되는 등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에 관한 업무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제공받거나 수집한 금융정보등을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제47조(벌칙) <신 설>	제47조(벌칙) ① 제2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생 략)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신 설>	③ 제2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 략)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제4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7조 또는 제4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양벌규정) ---------- ---------- ---------- ---------- --제47조제2항·제4항-------- ---------- ---------- ---------- ----------. --------- ---------- ---------- ---------- ----------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무부장관,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지청장, 검사, 경찰관서의 장, 법 제24조에 따른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이하 “본부심의회”라 한다), 법 제24조에 따른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이하 “지구심의회”라 한다) 또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제2호의 사무에 관하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기관·단체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	제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다.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법 제21조제2항·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에 관한 사무
<신 설>	4의3. 법 제29조의2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 요청에 관한 사무
<신 설>	4의4. 법 제29조의3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 요청과 그 처리에 관한 사무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10조의3(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사건관리회의) ① 검사는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의 범죄피해자 지원업무 담당 공무원, 사법경찰관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직원,	제10조의3(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사건관리회의) ① ---------- ---------- ---------- ---------- ---------- ---------- ---------- ---------- ----------

의사 및 변호사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사건관리회의(이하 이 조에서 “회의”라 한다)를 열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논의 및 의견 청취 등을 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법 제16조에 따른 구조금 및 법 제28조에 따른 긴급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생 략) ②·③ (생 략) <신 설>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 및 ------- 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의4(범죄피해자 인권 주간) 법 제11조의2에 따른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은 매년 11월 29일이 포함된 1주간으로 한다.
제11조(범죄피해자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11조(범죄피해자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 제16조(구조금의 분할 지급) ① 법 제17조제4항 단서에서 “연

	령, 장애, 질병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구조금 지급을 결정할 당시 구조피해자나 그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4. 노령, 장애,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심신상실 등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 ② 지구심의회는 법 제17조제4항 단서에 따라 구조금의 분할 지급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나 그 유족의 분할 지급 신청 여부·희망 분할 횟수 등 분할 지급에 대한 입장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③ 법 제17조제4항 단서에 따른 구조금의 분할 지급은 최대 48개월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④ 법 제17조제4항 단서에 따라 구조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에

	는 제3항에 따른 분할 지급 기간에 대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함께 지급해야 한다. ⑤ 법 제1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분할 지급하는 금액은 구조금과 제4항에 따른 이자를 더한 금액을 제3항에 따른 분할 지급 횟수에 따라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⑥ 지구심의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구조금의 분할 지급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직권 또는 구조피해자나 그 유족의 신청에 따라 남은 구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⑦ 구조금을 분할 지급하던 중 구조피해자나 그 유족이 사망한 경우 지급되지 않고 남은 구조금은 법 제18조에 따라 맨 앞의 순위인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⑧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남

	은 구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따른 단리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빼야 한다.
제16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 등과의 관계) 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상 또는 급여 등을 받을 수 있을 때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그 받을 금액의 범위에서 법 제16조에 따른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6조의2(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 등과의 관계) 구조피해자 ----------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제18조(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① 지구심의회는 구조피해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과 동시에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代位)하여 가해자에게 행사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8조(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① ---------- 구조피해자나 그 유족----------.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1조(평균임금의 기준) ① 법 제22조에 따른 평균임금은 매년	제21조(평균임금의 기준) ① ---

6회 이상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임금조사기관이 조사한 남자 또는 여자 보통 인부의 전국규모 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다만, 전국규모 통계가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지역 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2회 ---------- ----------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유족구조금의 금액)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족구조금의 산정에서 구조피해자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이하 “월급액등”이라 한다)에 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월 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월 수에 별표 4의 배수를 곱한 개월 수를 말한다. 다만, 유족구조금액은 평균임금의 48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2조(유족구조금의 금액) ---- ---------- ---------- ---------- ---------- ---------- ---------- ---------- ----------. -- ---------- ----------
1. 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유족: 40개월	1. ---------- 48개월
2.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유족: 32개월	2. ---------- 38개월
3. 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유족: 24개월	3. ---------- 28개월
제23조(장해구조금의 금액) 법 제	제23조(장해구조금의 금액) ----

22조제2항에 따른 장해구조금의 산정에서 구조피해자의 월급액등에 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월 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해등급별 개월 수에 별표 5의 배수를 곱한 개월 수를 말한다. 다만, 장해구조금액은 평균임금의 40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다.	---------- ---------- ---------- ---------- ---------- ---------- ----------. ---------- ---------- 48개월분--- ----------.
1. 1급: 40개월	1. -- 48개월
2. 2급: 36개월	2. -- 44개월
3. 3급: 32개월	3. -- 38개월
4. 4급: 28개월	4. -- 34개월
5. 5급: 24개월	5. -- 28개월
6. 6급: 20개월	6. -- 24개월
7. 7급: 16개월	7. -- 20개월
8. 8급: 12개월	8. -- 14개월
9. 9급: 8개월	9. -- 10개월
10. 10급: 4개월	10. --- 5개월
11. 11급 또는 12급: 3개월	11. ---------- 4개월
12. 13급 또는 14급: 2개월	12. ---------- 3개월
제24조(중상해구조금의 금액)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중상해구조금의 산정에서 구조피해자의 월급액등에 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월 수”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	제24조(중상해구조금의 금액) ① ---------- ---------- ---------- ---------- ----------

급 의료기관에 속하는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 등에 의하여 해당 중상해의 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월 수에 별표 5의 배수를 곱한 개월 수를 말한다. 다만, 중상해구조금액은 평균임금의 40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다.	---------- ---------- ---------- ---------- ----------.
②·③ (생 략)	---------- --- 48개월분---------- --.
제26조(지구심의회의 기능) 지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지구심의회의 기능)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구조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 여부 및 구조금액	3. ---------- 구조금 지급·분할 지급 ---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제36조(구조결정에 필요한 조사 및 증명절차) ① 지구심의회 위원장 또는 위원장의 명을 받은 사람은 법 제26조에 따른 구조금 지급결정(이하 “구조결정”이라 한다)에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에 사실을 조회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6조(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또는 구조결정에 필요한 조사 및 증명절차) ① ---------- ----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또는 법 제26조---------- ---------- ---------- -----.
② 지구심의회는 제1항에 따른	② ----------

조회의 회신, 제출자료, 신청인 및 그 밖의 관련인 진술 등 믿을 수 있는 증거자료에 의하여 구조결정을 하여야 한다.	---------- 증거자료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결정 또는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9조(결정 및 통지) ① (생 략)	제39조(결정 및 통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결정 주문	2. 결정 주문(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0조의2(자료 등의 파기 방법 및 열람·복사 요청) ① 법 제29조의2제5항 및 법 제29조의3제7항에 따른 자료 등의 파기 방법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다.
	② 지구심의회의 위원장은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해당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1.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가해자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되거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건의 재판서 2.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수사 또는 재판 절차에서 가해자가 범죄사실 또는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진술이 기재된 서류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손해배상금 수령의 신고) 영 제17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손해배상금 수령 신고서를 법 제16조에 따른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 지급을 신청한 지구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손해배상금 수령의 신고) ---------- ---------- ---------- ---------- --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 ---------- ----------.
<신 설>	제5조의2(외국인에 대한 구조) 법 제23조제2호나목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이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2에 따른 장기체류자격[동반(F-3) 체류자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6조(유족구조금 또는 긴급구조금의 지급신청) ① 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28조제2항에 따라 유족구조금이나 긴급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유족구조금·긴급구조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구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동일	제6조(유족구조금 또는 긴급구조금의 지급신청) ① --------- ---------- ---------- ---------- 사람(법 제23조에 따른 외국인을 포함한다) ---------- ---------- ----------. -------

순위의 유족 2명 이상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비고란에 그 뜻을 기재하되 중복되는 서류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 ---------- ----------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다음 각 목의 서류(구조피해자나 그 유족이 법 제23조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 해당 외국인이 범죄피해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해당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의 영주자격 또는 이 규칙 제5조의2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의 지급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에 기재되어 있는 제1항제2호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②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제2호 또는 제6호----------.
<신 설>	1. 제1항제2호에 규정된 관련 사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신 설>	2. 제1항제6호에 규정된 관련 사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장해・중상해구조금 또는 긴급구조금의 지급신청) ① 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28조제2항에 따라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 또는 긴급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장해구조금・중상해구조금・긴급구조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구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7조(장해・중상해구조금 또는 긴급구조금의 지급신청) ① ----------사람(법 제23조에 따른 외국인을 포함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다음 각 목의 서류(신청인이 법 제23조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 해당 외국인이 범죄피해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해당 외국인이 「출입국관

	리법」 제10조제2호의 영주자격 또는 이 규칙 제5조의2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의 지급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에 기재되어 있는 제1항제1호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② ---------- ---------- ----------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제2호 또는 제6호---------- ---------- ---------- ---------- ----. ---------- ---------- ---------- ----------.
<신 설>	1. 제1항제2호에 규정된 관련 사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신 설>	2. 제1항제6호에 규정된 관련 사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

	록표 등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신 설>	제7조의2(유족의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 또는 긴급구조금 지급신청) ① 법 제1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하는 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28조제2항에 따른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 또는 긴급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장해구조금·중상해구조금·긴급구조금 유족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구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동일 순위의 유족 2명 이상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비고란에 그 뜻을 기재하되, 중복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1.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 2.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구조피해자의 장해·중상해에 관한 서류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조피해자가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을 신청했을 당시 제7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이미 지구심의회에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급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6조제1항제2호 또는 제6호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제6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관련 사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2. 제6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관련 사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에 기재되어 있는 사

	항 ④ 신청인이 두 명 이상일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인 표시표를 첨부해야 한다.